차량관리 지침

제정 2009. 8. 17.

개정 2011. 5. 31.

개정 2013. 1. 30.

개정 2013. 9. 1.

개정 2014. 7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"진흥원"이라 한다) 관리하에 있는 차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차량"이라 함은 진흥원이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 도로 운송 차량법상의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.
- 2. "차량의 관리"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,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조치 및 정비유지, 운행에 관한 운영관리를 말한다.
- 3. "차량의 공용운행"이라 함은 차량을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3. 1.30>
- 제3조(관리책임자 등) ①진흥원의 차량관리책임자(이하 "관리책임자"라 한다)는 차량관 리부서의 소관팀장으로 한다.
 - ②관리책임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을 관리할 직원(이하 "관리원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제4조(기록) ①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취득, 폐차, 정비, 수리 기타 차량의 이력을 파악함에 참고되는 사항을 계속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②관리원은 [별지 제1호] 차량운행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제5조(검사 및 정비) ①관리원은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 검할 책임이 있다.
 - ②관리책임자는 매분기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정비대장과 대조하여 차량의 실태검사를 실시한다.
 - ③차량의 정비는 계속 검사 및 정기점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.

- ④차량의 수시정비는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정비공장에서 실시한다.
- ⑤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예방정비 의무사항을 차량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⑥모든 차량의 관리원은 일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차량의 이상유무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배차 및 주차) ①모든 차량은 공용운행에 한하여 배차하고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직원에게는 차량을 고정 배차한다.
 - ②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내(출·퇴근 소요시간 포함)에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.
 - ③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.
 - ④진흥원은 기관의 대내·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.<신설 2013. 1. 30>
 - ⑤진흥원은 기관의 대내·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원장에게 업무용차량을 제공할수 있다. 다만, 출퇴근 시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4. 7. 21>
- 제7조(운행신청)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2호] 배차신청서에 의거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간, 행선지, 사용목적, 승차인원을 기재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배차신청은 사용 1일전에 하여야 하며, 장거리 운행이나 공휴일 등의 운행신청은 사용 2일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당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배차신청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③배차신청에 대한 우선순위는 업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접수순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정한다.
 - ④관리책임자는 배차신청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배차신청자에 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유류보급 등) 진흥원 차량의 유류보급은 통상의 유류소비기준에 의하여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.
 - 1. 유류소모에 따른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2.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주유는 관리책임자가 발급한 주유카드로 주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유시마다 [별지 제3호] 차량급유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책임) ①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운행의 종합관리와 직원의 운송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원을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관리원은 관리책임자의지시에 따라야 한다.
 - ②사용자는 이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공용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③관리원 및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- 1.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을 청결하게 한다.
 - 2. 허가된 이외의 운행은 하지 아니한다.
 - 3. 도로교통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.
 - 4. 음주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5. 관리원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는 스스로 조정 정비하여야 한다.
 - 6. 기타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고) ①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원(또는 사용자)은 지체없이 구두로 우선 보고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[별지 제4호]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사고의 종류
 - 2. 사고발생 일시
 - 3. 사고발생 장소
 - 4. 당해 자동차일체의 이력사항(소유자, 차종, 기타)
 - 5. 사고장소의 약도
 - 6. 손해의 정도
 - 7. 사고원인 및 당시 상황처리 등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고보고서를 관리원(또는 사용자)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탑승자,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 - ③삭제<2013. 1. 30>
- 제11조(사고처리) 관리책임자는 제10조의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개인차량의 공용) 진흥원 직원의 개인차량을 진흥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주차권 반납) 직원 퇴직 혹은 사용자 변경 시에는 필히 주차권을 반납하여야 하며, 분실 또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5. 31)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1. 30>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7. 21>

이 지침은 부원장 인사발령 시부터 시행한다.

차 량 운 행 일 지

					담 당	팀 장
년	월	일	차량번호			
			관 리 원			
운행일시	행선지	운 행		<u> </u>	7	승 차 자
		거리(Km)	누계(Km)			

연	월 주 입 량	월 소 비 량	월 총주행거리(km)	비	고
豆					

배 차 신 청 서

결 신청인 팀 장		접	담 당
재		수	
신 청 번 호			
사용기간			
행 선 지			
사 용 목 적			
차 량 번 호			
운 전 자			
승 차 인 원			
위와 같이 시	나용코자 하오니 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	년 월 일		

차 량 급 유 대 장

차량번호 :

너 워 이	주유량(ℓ)	그에	지불방법		수령인	비 고
인 별 코	7 # 8(2)	다 ^국	현 금	카드번호	T 6 1	n ±

사고보고서

결	담 당	팀 장	단 장	실/본부장	원 장
재					

차량번호	사고	종류	
발생일시	장	소	
당해자동차 이력사항 (소유자, 차종 등)			
손해의 정도			
사고원인 및 당시 상황처리			
사고장소의 약도			

사고보고자 소속 :

성명: (인)